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867
----------	--------

제안년월일 : 2023년 7월 3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개정의 시행 시기를 기술연구원 해산 등기일로 변경하고, 관계법률에 맞춰 감사의 임명권자를 시장으로 규정한 문구를 삭제하며, 독립적이고 공정한 통합지원 업무의 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통합지원단의 설치·운영을 담당하도록 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안 부칙 제7조(「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개정)의 시행 시기를 조례 공포일에서 서울기술연구원 해산 등기일로 수정함(안 부칙 제1조).
- 선임직 이사와 감사의 임명권자를 시장으로 규정한 문구 삭제(안 부칙 제3조).
- 서울시가 통합지원단의 설치·운영을 담당하도록 하고, 통합지원단 업무 총괄을 위한 서울시 공무원 파견 규정을 삭제함(안 부칙 제6조).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5조까지의” 를 “제5조까지와 제7조의” 로 한다.

안 부칙 제3조제1항 단서 중 “따라 시장이” 를 “따라” 로 한다.

안 부칙 제6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1항을 본문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통합지원단 설치) 서울연구원 및 서울기술연구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통합과정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에 통합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부 칙	부 칙
<신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부터 <u>제5조까지</u> 의 규정은 서울기술연구원의 해산을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부터 <u>제5조까지와 제7조의</u> 규정은 서울기술연구원의 해산을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제3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기술연구원의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선임직 이사·감사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u>따라 시장이</u> 서울연구원의 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3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기술연구원의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선임직 이사·감사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u>따라</u> 서울연구원의 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 ⑤ (개정안과 같음)
<신설>	제6조(통합지원단 설치) ① 서울연구원 및 서울기술연구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통합과정 지원을 위해 <u>한시적으로</u> 통합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	제6조(통합지원단 설치) 서울연구원 및 서울기술연구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통합과정 지원을 위해 <u>한시적으로 시에</u> 통합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

	<p>② <u>통합지원단 업무를</u> <u>총괄하기 위해 시 소속</u> <u>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u> <u>다.</u></p>	<p><u><삭 제></u></p>
--	---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조사연구”를 “조사·기술개발·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의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의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기술개발·연구”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호(중전의 제7호) 중 “제1조의 목적달성”을 “도시문제 해결”로 한다.

3. 산업 및 기업연계 기술발전을 위한 조사·기술개발·연구
4. 국내외 선진 우수기술 발굴·평가·실증 및 기술사업화 지원

제4조제1항 중 “시설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을 “시설·운영·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로, “줄”을 “연구원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재산을 출연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연구원의 시설·운영·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연구원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5조제4항제4호 중 “사회적 학식”을 “학식”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총괄한다”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감사한다”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연구·조사의 위탁 및 자료제공)”을 “(조사 등의 위탁 및 자료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반 연구·조사 업무를”을 “각종 조사·기술개발·연구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조사·연구”를 “조사·기술개발·연구”로 한다.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1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부터 제5조까지와 제7조의 규정은 서울기술연구원의 해산을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

례는 폐지한다.

제3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기술연구원의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선임직 이사·감사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서울연구원의 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기술연구원에 재직하던 모든 직원(정원의 직원 포함)은 서울연구원에 채용된 것으로 보되, 근로계약 방식과 보수체계, 승진 등 각종 근로조건은 서울연구원의 정관과 제 규정을 따른다.

③ 제2항에 대한 각종 근로조건은 단일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서울연구원에 채용된 것으로 보는 직원이 보수 수준과 관련한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조정수당 등의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울연구원의 직원이 되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제4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기술연구원이 대외적으로 행한 법률행위의 효과와 법률관계는 서울연구원이 승계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기술연구원이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서울연구원의 사업으로 본다.

제5조(재산의 승계) 서울기술연구원의 모든 재산은 서울연구원이 승계한다.

제6조(통합지원단 설치) 서울연구원 및 서울기술연구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통

합과정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에 통합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7호바목을 삭제한다.

②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지진안전센터”를 “서울연구원”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p>1. 시 행정 및 의회 의정에 관한 중·장기계획 및 자료의 <u>조사연구</u></p> <p>2. 시 행정 및 의회 <u>의정의 주요 당면 과제에 대한 조사연구</u></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3. ~ 6. (생략)</p> <p>7. 그 밖에 <u>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u></p> <p>제4조(기금 및 출연금) ① 시는 연구원의 <u>시설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줄 수 있다.</u></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② 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p>	<p>제3조(사업) ----- -----.</p> <p>1. ----- ----- <u>조사·기술개발·연구</u></p> <p>2. ----- <u>의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기술개발·연구</u></p> <p>3. <u>산업 및 기업연계 기술발전을 위한 조사·기술개발·연구</u></p> <p>4. <u>국내외 선진 우수기술 발굴·평가·실증 및 기술사업화 지원</u></p> <p>5. ~ 8. (현행 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p> <p>9. ----- <u>도시문제 해결</u>----- -----</p> <p>제4조(기금 및 출연금) ① ----- <u>시설·운영·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 연구원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재산을 출연할 ---.</u></p> <p>② <u>연구원의 시설·운영·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연구원 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u></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금을 둘 수 있다. 기금은 시, 자치구 및 그 이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

제5조(이사회 등) ① ~ ③ (생략)

④ 원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이사로 추천한다.

1. ~ 3. (생략)

4. 사회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기여할 것으로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

⑤·⑥ (생략)

제6조(원장 등) ①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감사는 연구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생략)

제7조(연구·조사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와 의회는 각각 시정과 의정에 관련된 제반 연구·조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5조(이사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3. (현행과 같음)

4. 학식-----

⑤·⑥ (현행과 같음)

제6조(원장 등) ① -----
-----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② -----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조사 등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
----- 각종 조사·기술개발·연구를 -----

-----.

1. ~ 4. (현행과 같음)

<p>② 연구원은 시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u>조사·연구</u>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② ----- <u>조사·기술개발·연구</u> ----- ----- -----.</p>
<p>③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u>제11조</u>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③ (현행과 같음)</p> <p><u>제11조(공무원의 파견)</u> 시장은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p> <p><u>제12조</u> (현행 제11조와 같음)</p> <p><u>제13조(규칙)</u>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